

〈수시 공시〉

2023. 6. 30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)에 의거하여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No.	펀드명
1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투자신탁(UH)(주식) (모집합투자기구 : 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(주식))

2. 세부 내역

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협회표준코드 1 (운용펀드)	협회표준코드 2 (투자자펀드)	소규모 사유 발생일자
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투자 신탁(UH)(주식) (모펀드 : 신영글로벌고배당 권모투자신탁(주식))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A 형	K55209BB0534 (모펀드: K55209BB0526)	K55209BB0542	2017-04-12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1 형		K55209BB0559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2 형		K55209BB0567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3 형		K55209BB0575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4 형		K55209BB0583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5 형		K55209BB0591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-P 형		K55209BH5768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-P2 형		K55209BH5776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Ae 형		K55209CZ9098	
	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(UH)(주 식)C-Pe 형		K55209CZ9148	

3. 해지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해지(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)

4. 해지 일자 : 2023년 08월 01일(화)

5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(<http://www.dis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